

### 3. 표준산업분류 개요

#### 가. 산업 정의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 나. 분류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또한,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다. 분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므로 이 분류의 범위는 국민계정(SNA)에서 정의한 것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하고 있다. 다만,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982)’은 SNA 생산영역 밖에 있지만 가구의 생계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틀이 되기 때문에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981)’과 병행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들 분류는 일반적인 사업체 조사에서는 이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노동력조사 같은 가구 대상 조사에서 표준산업분류의 다른 산업활동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계활동을 분류할 수 있다.

## 라. 분류 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

-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 산출물의 수요처
  -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마. 통계 단위

### 1) 개념

통계단위란 생산단위의 활동(생산, 재무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를 말한다. 관찰단위는 산업 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 하나 이상 장소 | 단일 장소  |
|------------|----------|--------|
| 하나 이상 산업활동 | 기업집단 단위  | 지역 단위  |
|            | 기업체 단위   |        |
| 단일 산업활동    | 활동유형 단위  | 사업체 단위 |

\* 하나의 기업체 또는 기업집단을 전제함

## 2) 사업체 단위 정의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 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이므로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 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사업체 단위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재무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이다.

##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 1) 생산단위 활동 형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및 보조적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 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을 말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주된 활동과 부차적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보조 활동에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에 따라 단위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부가가치는 산출물과 중간소비 간의 차이로 정의되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각 경제단위의 기여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보조 활동은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생산활동과 보조활동이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역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조단위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활동단위는 보조단위로 보아서는 안되며 별개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가)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생산, 예를 들면 자기계정을 위한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건설 활동으로 분류한다.
- 나)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다른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다) 모 생산단위가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성 부품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예를 들면 모 생산단위의 생산품을 포장하기 위한 캔, 상자 및 유사 제품의 생산활동
- 라) 연구 및 개발활동은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SNA 측면에서는 고정자본의 일부로 고려된다.

## 2) 산업 결정 방법

- 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나)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라)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마) 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본부, 본사 등)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 개조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기계장비 및 용품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지만, 산업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독립된 분류에서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7)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정상적인 유지·수리를 포함하여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자본재와 소비재로 함께 사용되는 컴퓨터, 자동차, 가구류 등과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소비재 물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은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철도 차량 및 항공기 제조 공장,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고객의 특정 사업장 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 8)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 9)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의무가입 성격의 연금 업무’ 이외의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반대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공공행정 부문에 속하는 산업활동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행정 부문으로 포함한다.
- 10) 생산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은 경제활동 자체의 특징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동일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정부기업, 외국계 기업 등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 11)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 아.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

- 1)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된다.
- 2)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 3)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 4) 분류 항목 간에 산업 내용의 이동을 가능한 억제하였으나 일부 이동 내용에 대한 연계분석 및 시계열 연계를 위하여 부록에 수록된 신규 연계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5)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 6)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으며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분류 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분류가 세분되지 않을 때는 “0”을 사용한다(예를 들면 중분류 02/임업, 소분류/020).

자. 구·신분류 단계별 분류 항목 수 비교

| 대분류                           | 중분류 |     | 소분류 |     | 세분류 |     | 세세분류  |       |
|-------------------------------|-----|-----|-----|-----|-----|-----|-------|-------|
|                               | 10차 | 11차 | 10차 | 11차 | 10차 | 11차 | 10차   | 11차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3   | 3   | 8   | 8   | 21  | 21  | 34    | 33    |
| B 광업                          | 4   | 4   | 7   | 7   | 10  | 10  | 11    | 11    |
| C 제조업                         | 25  | 25  | 85  | 85  | 183 | 182 | 477   | 480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br>공급업    | 1   | 1   | 3   | 3   | 5   | 5   | 9     | 10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원료 재생업  | 4   | 4   | 6   | 6   | 14  | 14  | 19    | 19    |
| F 건설업                         | 2   | 2   | 8   | 8   | 15  | 16  | 45    | 46    |
| G 도매 및 소매업                    | 3   | 3   | 20  | 20  | 61  | 62  | 184   | 186   |
| H 운수 및 창고업                    | 4   | 4   | 11  | 11  | 19  | 19  | 48    | 47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2   | 2   | 4   | 4   | 9   | 11  | 29    | 30    |
| J 정보통신업                       | 6   | 6   | 11  | 12  | 24  | 26  | 42    | 45    |
| K 금융 및 보험업                    | 3   | 3   | 8   | 8   | 15  | 14  | 32    | 29    |
| L 부동산업                        | 1   | 1   | 2   | 2   | 4   | 4   | 11    | 1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   | 4   | 14  | 14  | 20  | 20  | 51    | 50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br>임대 서비스업 | 3   | 3   | 11  | 11  | 22  | 22  | 32    | 32    |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br>행정       | 1   | 1   | 5   | 6   | 8   | 10  | 25    | 28    |
| P 교육서비스                       | 1   | 1   | 7   | 7   | 17  | 17  | 33    | 3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   | 2   | 6   | 6   | 9   | 9   | 25    | 25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br>서비스업      | 2   | 2   | 4   | 4   | 17  | 17  | 43    | 43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br>개인 서비스업 | 3   | 3   | 8   | 8   | 18  | 18  | 41    | 41    |
|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br>생산활동     | 2   | 2   | 3   | 3   | 3   | 3   | 3     | 3     |
| U 국제 및 외국기관                   | 1   | 1   | 1   | 1   | 1   | 1   | 2     | 2     |
| 21                            | 77  | 77  | 232 | 234 | 495 | 501 | 1,196 | 1,205 |